



인도네시아 Tax Info 2022 년 5 월호

개정세법(Law on Harmonization of Tax Regulations)과의 일관성을 위한 부가세 규정 업데이트

2022 년 4 월 1 일 부가세 관련 2021 년 법률 No.7(Law on Harmonization of Tax Regulations (UU HPP))이 개정 발효되었으며([Tax Info October 2021](#) 및 [Tax Alert November 2021](#) 참조). UU HPP 개정 내용과의 일관성을 위해 2022 년 3 월 30 일 인니 재무부 장관(MoF)은 기존 부가세 규정을 대체하는 일부 규정을 발표함.

재무부 장관 발행 관련 규정은 아래 요약표와 같으며 모두 2022 년 4 월 1 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관련 영향이 있는 납세자들은 신규 규정 검토 및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함.

In this issue:

1. [VAT regulations updated to synchronize with Law on Harmonization of Tax Regulations](#)
2. [Regulation on tax and nontax payments to the state for coal mining industry issued](#)

Customs Focus:

3. [Update on procedures for clearance of imported goods for use](#)

신규 재무부 장관령	제목	폐지된 기존 재무부 장관령	비고
60/PMK.03/2022 (PMK-60)	전자 상거래에 대한 부가세 처리 (<i>perdagangan melalui sistem elektronik (PMSE)</i>)	48/PM6K.03/2020 (Tax Alert July 2020 참조)	PMK-60 의 조항은 이전 규정의 조항과 대체로 동일함. PMK-60 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 년 4 월 1 일부터 표준 부가세율은 10%에서 11%의 신규 표준 세율로 인상됨 (늦어도 2025 년까지 12%로 인상 예정). 국세청의 온라인 시스템 준비에 따라 PMK-60 에 분기별 PMSE(전자상거래) 부가세 신고서에 공개해야 하는 정보가 더 자세히 설명되었음. PMSE 부가세 징수자는 이제 최소한 다음을 포함하여 PMSE 부가세 신고서에 각 거래의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PMSE 부가세 징수 증명서 번호 및 날짜; 각 PMSE 부가세 징수에 대한 과세 기준 금액; 각 PMSE 부가세 징수에 대한 PMSE 부가세 금액; 및 고객명 및 납세자번호(Nomor Pokok Wajib Pajak(NPWP))(있는 경우). 이전에는 이러한 정보가 DGT 요청시 연간 PMSE 부가세 신고서에만 공개됨. 기존 시행령(PER-12/PJ/2020)은 PMK-60 과 배치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함. 기존 PMSE 부가세 징수자 지정서는 DGT 가 새로운 지정서 발행시까지 지속 유효함.
61/PMK.03/2022 (PMK-61)	개인이나 단체의 직무나 직업과 무관한 자가 건설활동으로서, 그 건설결과를 개인이나 단체가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는 행위 (자가건설).	163/PMK.03/2012 (PMK-163)	PMK-61 의 조항은 이전 규정의 조항과 대체로 동일함. PMK-61 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 부가세율은 10%에서 11%로 인상됨 (늦어도 2025 년까지 12%로 인상 예정). 부가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됨: $(20\% \times \text{부가세율}) \times \text{건설 활동에 소요된 비용 (토지 구매 가격 제외)}$. 자가건설활동은 통상적인 사업과정인 아닌 자가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기 위한 활동으로 신축 또는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다른 당사자가 수행한 건설이 포함되지만 VAT 는 상대방이 징수하지 않습니다(특정 예외 제외). 건물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 및/또는 건물에 고정된 단일 또는 다중 엔지니어링 건축물로 정의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목재, 콘크리트, 벽돌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 및/또는 강철로 구성됨; 주택 또는 사업 활동 장소로 의도됨; 및 건축 면적이 200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자가건설활동은 다음과 같이 수행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 기간 동안 단일 단계; 또는 단계적으로 건설단계 사이의 기간이 2 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 기간이 2 년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 단계는 별도의 자체 구축 활동으로 계산됨. 자가건설 관련 납세증명서 (부가세 세금 계산서로 간주됨), 정산, 부가세 신고에 대한 조항이 업데이트되었음.

신규 재무부 장관령	제목	폐지된 기존 재무부 장관령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가세 납세사업자 아닌, 즉 부가세 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PKP)의 경우 자가건설활동에 대한 부가세 납부 또는 정산은 부가세 신고와 동일함. 자가건설활동에 대해 납부해야 할 부가세가 없는 회계 기간에 PKP 는 자가건설활동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거나 신고할 의무가 면제됨. PMK-163 에 따라 DGT 는 자가건설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부가세를 정산 및/또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경고장을 발행하고 정산 및/또는 신고된 부가세 금액이 “비정상적”인 경우 권고장을 발행함. PMK-61 에 따라 DGT 는 두 경우(정산 및/또는 신고) 모두 권고장을 발행함. <p>PMK-61 은 2022 년 4 월 이전에 수행된 자가건설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과규정을 제공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PMK-61 이 발효되기 전에 부가세가 정산된 경우 PMK-163 을 따름; 및 PMK-61 이 발효된 이후 부가세가 정산되는 경우 PMK-61 을 따름.
62/PMK.03/2022 (PMK-62)	보조금을 받는 액화 석유 가스 (LPG) 제품 인도에 대한 부가세 처리	220/PMK.03/2020	<p>PMK-62 의 조항은 이전 규정의 조항과 대체로 동일함. PMK-62 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 부가세율은 10%에서 11%로 인상됨 (늦어도 2025 년까지 12%로 인상 예정). 정부가 보조하는 LPG 가격의 일부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정부가 부담함. 나머지 가격 부분에 대한 부가세는 구매자가 부담함. 특정 비보조 LPG 에 대한 부가세 계산법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지정 법인이 인도하는 경우 부가세는 다음 계산법을 사용함: $\text{표준 부가세율} \times 100 / (100 + \text{해당 표준 부가세율}) \times \text{소매 판매 가격}$. 특정 LPG 인도와 관련된 매입 부가세는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 공제 가능함. 유통 대리인이 인도하는 경우 부가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 년 4 월 1 일부터: $1.1/101.1 \times \text{소매 판매 가격}$ 초과한 유통 대리인 판매 가격; 또는 늦어도 2025 년까지 새로운 부가세율이 시행되면: $1.2/101.2 \times \text{소매 판매 가격}$ 초과한 유통 대리인 판매 가격. <p>특정 LPG 인도와 관련된 매입 부가세는 유통 대리인이 세액 공제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판매 대리인이 인도하는 경우 부가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 년 4 월 1 일부터: $1.1/101.1 \times \text{유통 대리인의 판매에 초과하는 재판매 대리인의 판매 가격}$; 또는 늦어도 2025 년까지 새로운 부가세율이 시행되면: $1.2/101.2 \times \text{유통 대리인 판매 가격에 초과하는 재판매 대리인 판매가격}$.

신규 재무부 장관령	제목	폐지된 기존 재무부 장관령	비고
			<p>특정 LPG 인도와 관련된 매입 부가세는 재판매 대리인이 세액 공제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PMK-62 는 정부 지정 법인, 유통 대리인 및 재판매 대리인에 의한 인도에 관한 부가세 계산과 부가세 세금 계산서 작성 절차에 대한 예를 제공함.
63/PMK.03/2022 (PMK-63)	담배 제품의 부가세 처리	2016/PMK.010/207 에 의해 수정된 174/PMK.03/2015	<p>PMK-63 의 조항은 이전 규정의 조항과 대체로 동일함. PMK-63 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배 제품에는 전자 담배도 포함됨. PMSE 에 대한 표준 부가세율은 10%에서 11%로 인상됨 (늦어도 2025 년까지 12%로 인상 예정). 그 결과 유효 부가세는 9.9% x 소매 가격(12% 부가세율이 시행된 경우 10.7%)이 됨. PMK-63 은 선물로 담배 제품을 인도하는 것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 부가세는 담배 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 단계에서 한 번만 부과됨. 담배 제품만 인도하는 유통업자는 PKP 로 등록할 필요가 없음.
64/PMK.03/2022 (PMK-64)	특정 농산물 인도에 대한 부가세 처리 (농업, 농작물 및 임업)	89/PMK.010/2020	<p>PMK-64 의 조항은 이전 규정의 조항과 대체로 동일함. PMK-64 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 부가세율은 10%에서 11%로 인상됨 (늦어도 2025 년까지 12%로 인상 예정). PMK-64 는 부가세 계산시 다른 부가세 부과 기준(<i>menggunakan nilai lain sebagai dasar pengenaan pajak</i>)에서 최종 부가세 제도(<i>menggunakan besaran tertentu untuk memungut dan menyetorkan PPN</i>)로 변경함. 유효 부가세율은 1.1% x 판매 가격. (1.2% x 판매 가격(12% 부가세율 시행 시)). 특정 농산물을 인도하는 PKP 는 일반 부가세법을 따르거나 최종 부가세 제도를 사용하여 농산물 인도에 대한 부가세를 계산할 수 있음. 최종 부가세 제도를 사용하려면 PKP 가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이전 규정에 따라 부가세를 계산하기 위해 다른 부가세 부과 기준을 사용한 PKP 는 PMK-64 에 따라 최종 VAT 제도를 자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통지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최종 부가세 제도를 사용하는 PKP 는 최종 부가세 제도를 사용하는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회계 기간 마감시까지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일반 부가세 제도 사용으로 변경할 수 있음. 다시 일반 부가세 제도 사용으로 선택한 PKP 는 더 이상 최종 부가세 제도 사용으로 전환할 수 없음. 최종 부가세 제도가 적용되는 다른 PKP 로부터 특정 농산물을 구매하는 농장, 작물 및 임산물을 처리하는 산업 사업체는 부가세 징수자로 지정됨. 최종 부가세 제도가 적용되는 판매자 PKP 는 최종 부가세 제도를 사용하여 인도된 상품과 관련 매입 부가세를 청구할 수 없음.

신규 재무부 장관령	제목	폐지된 기존 재무부 장관령	비고
66/PMK.03/2022 (PMK-66)	농업 부문을 위한 보조금 지원 비료 납품에 대한 부가세 처리	62/PMK.03/2015	<p>PMK-66 의 조항은 이전 규정의 조항과 대체로 동일함.</p> <p>PMK-66 의 주요 변경 사항은 표준 부가세율을 10%에서 11%로 인상한 것임 (늦어도 2025 년까지 12%로 인상 예정).</p> <p>비료 제조업체 단계에서 징수할 부가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 부분: 표준 부가세율 x 100/(100 + 표준 부가세율) x 보조금 금액(이미 부가세 포함); 및 • 비보조 부분: 표준 부가세율 x 100/(100 + 표준 부가세율) x 최고 소매가(harga eceran tertinggi). <p>제조업체는 각 인도에 대해 부가세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함.</p> <p>보조금을 받는 비료만 제공하는 것이 주요 활동인 유통업체 또는 소매업체는 PKP 로 등록할 필요가 없음.</p>
67/PMK.03/2022	보험 대리인 및 중개인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세 처리	해당 없음	Tax Info April 2022 참조.
70/PMK.03/2022 (PMK-70)	부가세가 적용되지 않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2/PMK.03/2012; • 18/PMK.010/2015; • 43/PMK.010/2015; and • 158/PMK.010/2015. 	<p>UU HPP 에 따라 다음을 제외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는 부가세가 적용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지방세가 과세되는 상품; • 돈, 금괴(인도네시아의 금 보유량을 나타냄) 및 증권; • 종교 서비스; 및 • 다른 당사자가 제공할 수 없는 정부 행정 서비스. <p>PMK-70 은 이미 지역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비과세 상품, 즉 다음을 규정하기 위해 발행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음료 및 케이터링 서비스; •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 호텔 서비스; 및 • 주차 서비스. <p>PMK-70 은 비과세 상품/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해당 규정을 단일 규정으로 결합함. 관련 비즈니스 활동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PMK-70 이 비과세 활동에 대한 일부 세부 조정을 하므로 이 규정을 검토해야 함.</p>
71/PMK.03/2022 (PMK-71)	특정 과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세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5/PMK.011/2010 제 2 조 j, k, m 항 (121/PMK.03/2015 (PMK-75) 에 의해 최종 수정됨); • 92/PMK.03/2020 (PMK-92) 제 8 조; 및 • 6/PMK.03/2021 (PMK-6) 	<p>PMK-71 은 특정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제도를 다른 부가세 부과 기준을 사용하여 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에서 최종 부가세 제도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유효 부가세율을 생성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포우편 서비스: 1.1% x 보상 금액. • 특정 여행사 서비스 및/또는 여행 패키지 제공: 1.1% x 여행 패키지, 교통 및 숙박 시설 가격. • 운송 서비스: 1.1% x 청구 금액.

신규 재무부 장관령	제목	폐지된 기존 재무부 장관령	비고
		제 13 조 5b 항 및 제 16 조 4b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교와 비종교가 혼합된 여행 패키지 서비스: 1.1% x 비종교 여행 패키지 가격 (여행 패키지 가격이 종교 여행 부분(부가세 비과세)과 비종교 여행 부분(부가세 부과됨)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또는 0.55% x 전체 여행 패키지 가격(여행 패키지 가격이 종교 여행 부분과 비종교 여행 부분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미디어 상품권 마케팅 서비스, 상품권 유통 관련 거래 결제 서비스, 수수료 및 마진 없는 소비자 로열티/보상 프로그램 관련 서비스: 1.1% x 상품권 판매 가격. <p>위의 최종 부가세율은 표준 부가세율 11%를 기준으로 함. 늦어도 2025 년에 최종 세율 표준 12%로 인상되면 부가세율이 인상됨.</p>

석탄 산업에 대한 과세 및 비과세 국고 수입에 관한 규정 발표

2022 년 4 월 11 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탄 산업 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과세 및 비과세 소득(Penerimaan Negara Bukan Pajak(PNBP))에 관한 조항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2022 년 규정 No. 15(PP-15)를 발표했음. PP-15 는 2022 년 4 월 17 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업계에 더 많은 법적 비즈니스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PP-15 is intended to provide more legal and business certainties for coal mining industry.

이 규정은 다음 석탄 산업 면허 소지자에게 적용됨:

- 현행 광업법에 따른 광업 사업 면허(izin usaha pertambangan(IUP));
- 국가 보호 구역 내에 대한 특별 광업 사업 면허 (izin usaha pertambangan khusus (IUPK));
- 석탄 작업 계약의 연속성을 위한 IUPK(ex-CCoW IUPK));
- CCoW 에 소득세 조항이 규정된 CCoW (Lex-Specialis Income Tax CCoW); 및
- 소득세 규정이 현행 소득세법을 따르는 CCoW (Lex-Generalis Income Tax CCoW).

소득세 처리

PP-15 에 따른 소득세는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CCoW 의 조건을 계속 따라야 하는 Lex-Specialis Income Tax CCoW 를 제외하고 위의 모든 유형의 광업 사업 면허 소유자에게 적용됨. PP-15 에 따른 주요 소득세 조항은 아래와 같음.

소득인식 및 손금

탄광업 면허 소지자가 획득한 소득은 석탄 판매 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구성됨. 석탄 판매 가격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가격은 다음 중 높은 값임.

- 거래 당시 석탄 벤치마크 가격 (harga patokan batubara (HBA)) 또는 지수 가격 (indeks harga batubara) 중 더 낮은 가격 (지수 가격은 Energy Publishing Coking Coal, Globalcoal New Castle, ICI/Argus Coalindo, IHS Markit, New Castle Export, Platts 또는 HBA 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다른 가격 지수일 수 있음); 및
- 판매자가 받아야 하는 실제 석탄 가격.

특정 상황에서의 석탄 판매(예: 마인마우스 독립 발전사에 대한 석탄 공급, 석탄 업그레이드, 국내 시장 판매 의무) 경우 판매 가격은 현행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PP-15 는 탐사 비용, 타당성 조사 비용, 일반 연구 비용, 비과세 소득 기여금, 채굴 후 비용 및 생산 운영 비용과 같이 세금 목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상세한 목록을 제공함. 소득세 계산, 비공제 비용, 과세 소득, 이월결손금 및 세율과 관련된 기타 조항은 현행 세법을 참조해야 함. 또한 정부에 대한 순이익 "배분"은 공제되지 않음.

과세 및 PNBP

IUP 및 IUPK 보유자를 위한 과세 및 PNBP 와 관련된 조항은 현행 규정을 따릅니다.

CCoW 에 대한 과세 및 PNBP 와 관련된 조항은 CCoW 의 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CCoW 가 만료될 때까지 유효함.

만료일이 2025 년까지인 ex-CCoW IUPK 에 적용되는 과세 및 PNBP 는 다음 표에 요약되어 있음.

과세 및 PNBP 유형	적용 세율
확정채굴료 (iuran tetap)	IUPK 발급일 현행 세법에 따름
Ex-CCoW 국가 자산 사용	0.21% x 판매 가격
생산 로열티	현행 규정을 따름. 세율 범위는 HBA 에 따라 14%에서 28%.
Ex-CCoW 의 세후 순이익에서 중앙정부가 부담	4% (IUPK 발급일 현행의 세법에 의거)
Ex-CCoW 의 세후 순이익에서 지방정부가 부담	6% (IUPK 발급일 현행의 세법에 의거)
환경 및 임업을 위한 PNBP	IUPK 발급일 현행 세법에 따름
법인 소득세	22%
토지 및 건물세	IUPK 발급일 현행 세법에 따름

IUP, IUPK 및 ex-CCoW IUPK 보유자의 기타 과세 및 PNBP 의무는 현행 세법 및 규정을 따름.

여기에 탄소세, 관세, 소비세, PNBP, 지방세, 인지세, 원천징수세 및 징수된 세금, 부가세가 포함되며 또한 PP-15 는 과세 및 PNBP 가 적용되는 날짜(ex-CCoW IUPK 가 발행된 연도의 그 다음 회계연도 또는 역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기장

Ex-CCoW IUPK 는 해당 광업 사업 면허가 발행된 회계연도 그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CCoW 에 명시된 언어와 통화로 장부를 유지할 수 있음. 그 후, ex-CCoW 는 현행 규정에 의거 회계장부를 인도네시아어 및 IDR 통화로 유지하여야 하며 ex-CCoW 가 현행 규정에 따라 영어 및 USD 통화 사용 통보를 한 경우는 예외임.

납세자는 장부와 증빙 서류를 현행 세법에 따라 관리해야 함. 광업을 위한 탐사 기간이 법령에 규정된 일반적인 회계장부 보존기간인 10 년 이상인 경우 그 기록, 자료 및 정보를 생산 작업 단계가 승인된 기관에 의해 승인된 기간(월)까지 유지하여야 함.

기타 사항

광업 면허 보유자는 다른 광업 면허 보유자 및/또는 광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단체와 협력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광업 면허 보유자의 세금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무부 장관이 제공함.

PP-15 는 각 유형의 광업 면허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경과규정의 세부 목록을 제공함.

IUP, IUPK 및 Lex-Generalis CCoW 에 적용되는 소득세 조항은 PP-15 가 발효되는 회계 연도의 다음 회계 연도부터 발효됨.

관세 포커스

사용을 위한 수입품 통관 절차 업데이트

수입품 통관에 대한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관세청(DGCE)은 사용을 위한 수입품에 관한 규정 No. PER-02/BC/2022(PER-02)를 발행하여 규정 No. PER-16/BC/를 개정했음.

개정의 주된 이유는 수입품 통관에서 '옐로우 레인'이 폐지되기 때문임.(PER-16 에 의거 옐로우 레인은 실사 없이 상품 통관 승인서(SPPB) 발행 전에 문서 검토를 통해 수입품 통관을 서비스하고 모니터링하는 프로세스임.) 따라서 현재 수입품 통관의 두 가지 범주는 그린레인 및 레드레인임.

PER-02 가 2022 년 4 월 25 일에 발효되면 이전에 옐로우 레인으로 분류되어 아직 SPPB 를 받지 못한 수입품 통관은 기존 PER-16 조항에 따라 처리됨.

PER-02 improves DGCE services on the clearance process of imported goods by removing the yellow lane.

Contact Persons

Questions concerning any of the subjects or issues contained in this newsletter should be directed to your usual contact in our firm, or any of the following individuals:

Business Tax
Melisa Himawan
Tax & Legal Leader
mehimawan@deloitte.com

**Business Tax, M&A and Tax
Management Consulting**
John Lauwrenz
jlauwrenz@deloitte.com

Transfer Pricing
Roy David Kiantiong
rkiantiong@deloitte.com

**Business Tax and
International Tax**
Cindy Sukiman
csukiman@deloitte.com

**Business Tax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Ratna Lie
ratnalie@deloitte.com

Transfer Pricing
Balim
bbalim@deloitte.com

Business Tax
Dionisius Damijanto
ddamijanto@deloitte.com

**Business Tax, Business Process
Solutions and Gi3**
Roy Sidharta Tedja
roytedja@deloitte.com

Transfer Pricing
Shivaji Das
shivdas@deloitte.com

Business Tax
Heru Supriyanto
hsupriyanto@deloitte.com

**Business Tax, Indirect Tax and
Global Trade Advisory (Customs)**
Turmanto
tturmanto@deloitte.com

Transfer Pricing
Sandra Suhenda
ssuhenda@deloitte.com

Business Tax
Muslimin Damanhuri
mdamanhuri@deloitte.com

**Global Employer Services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Irene Atmawijaya
iatmawijaya@deloitte.com

Global Employer Services
Sri Juliarti Hariani
shariani@deloitte.com

Business Tax
Reggy Widodo
rwidodo@deloitte.com

Deloitte Touche Solutions
The Plaza Office Tower, 32nd Floor
Jl. M.H. Thamrin Kav 28-30
Jakarta 10350, Indonesia
Tel: +62 21 5081 8000
Fax: +62 21 2992 8303
Email: iddttl@deloitte.com
www.deloitte.com/id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Indonesia
In Indonesia, services are provided by Deloitte Touche Solution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